NASC

Volume. 06

News Letter

www.na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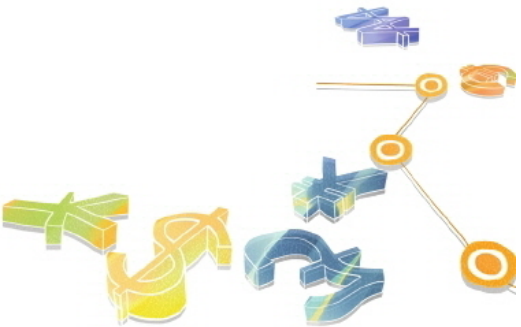

국가회계기준센터 1주년 기념세미나를 맞이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자산재평가 –

공지사항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NASC News Letter
Volume. 06
www.na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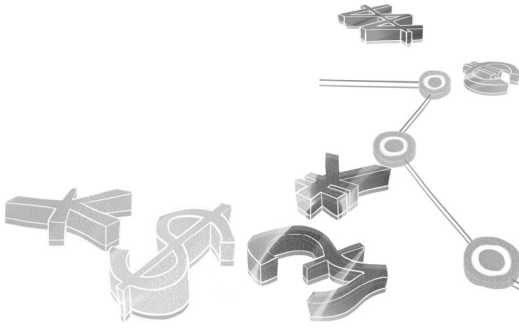

목차

국가회계기준센터 1주년 기념세미나를 맞이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자산재평가

공지사항

01
NASC

국가회계기준센터 1주년 기념세미나를 맞이하여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지난 9월 1일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 제1주년 기념세미나 가운데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의 축사를 옮깁니다. 편집자 주 –

오늘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는 2009년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운영에 미치는 효과를 공감하고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년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가회계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였습니다.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회계연도부터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2010년 7월 발족한「국가회계기준센터」는, 이러한 회계·결산제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국가 재정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의 구심점이 되는 변화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생산" 측면으로,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산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활용" 측면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산·부채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중심적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재정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효과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국민·국회 등 재정정보이용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재정투명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감소시키고 재정사업별 성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년간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반면, 앞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에 기대되는 역할은 새로이 도입된 회계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발생주의 방식으로 산출된 다양한 재정정보를 자산·부채 관리 및 재정집행 성과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일입니다.

이에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학계 및 회계업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정자(Coordinator)"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국가회계제도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재무제표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기법 및 활용방법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변화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공무원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함은 물론, 정부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침체의 늪에 빠트렸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견고한 재정지출 여력을 바탕으로 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미국의 재정적자,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드리운 암운(暗雲)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고비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인 동시에, 세계 경제의 안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은 이전에 비해 보다 투명하고 정밀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정책설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수요 증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게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02

NASC

오미경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Tel_02.3149.7571 / e-mail_ mkoh@kicpa.or.kr

01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발행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홍보와 국가회계 실무담당자들의 이해력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알기쉬운 국가회계제도」책자를 9월 1일 발행하였다. 본 책자는 실무담당자들이 국가회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 다양한 예시를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소개, 재무제표 소개, 주요 계정과목 및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책자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홈페이지 FAQ 강화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 실무교육 또는 업무수행 중 실무자들로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질문들과 이를 짧고 알기쉽게 정리한 답변들을 모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에 FAQ로 게재하였다.

국가회계기준과 실무지침에 쉽게 친숙해지기 어려운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홈페이지 내의 검색기능 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실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FAQ를 포함하여 도합 약 200여개의 질문과 답변이 9월 말까지 정리 및 완성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게재된 질문과 답변들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 우측 상단의 질의응답 메뉴 중 FAQ 또는 홈페이지 우측하단의 FAQ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3 제5차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 개최 (8.25)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위원장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교수)가 8월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통합(안), 예산배정 국고금 회계처리 검토 등 3개의 안건을 보고하고 센터 업무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04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 –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9.1)

국가회계기준센터는 9월 1일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가회계 관련 주요부처 담당 공무원, 결산담당자, 공인회계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세미나는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정착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1년 활동내역보고'와 '미 연방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보고 모형 개선사례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제시', '발생주의 정부회계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상노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보고를 통해 정부의 발생주의·복식부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역할과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공공부문 회계의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다짐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윤정원 국가회계기준센터 책임연구원은 "미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의 재무보고 모형 개선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연방재무정보의 질을 개선하고자 FASAB에서 연구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무보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허웅 안진회계법인 이사는 발표를 통해 향후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논란 되었거나 현재 논란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면서 정부회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에는 사회자에 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자에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이경섭 서울시 민감사옴부즈만, 이장희 충북대학교 교수,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앞서 진행된 세 가지의 발표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회계기준센터 및 정부회계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축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앞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발생주의 방식으로 산출된 다양한 재정정보를 자산·부채 관리 및 재정집행 성과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05 인도네시아 재정부 KSP담당자 센터 방문 (9.23)

인도네시아 재정부(MOF) 소속 공무원 및 학계 대표로 구성된 방문단 일행이 KSP 정책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각 기관을 방문 견학하였다. 특히 9월 23일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재정 전 부문에 도입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가회계기준센터를 방문하여 양국의 재정부문 회계선진화를 위한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뤄진 이번 방문은 편호범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윤정원 국가회계기준센터 책임연구원이 국가회계기준센터에 대한 소개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방문단 일행은 국가회계기준 및 한국의 발생주

의 국가회계제도 및 국가회계센터의 역할, 발생주의 도입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하며 많은 질문을 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06 2011 국제학술세미나 (9.28~30)

국가회계기준센터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9월 28~30일 충북대학교에서 「2011 국제학술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정부회계 발전방향과 핵심과제의 국제비교연구'의 주제로 정부회계 관련 주요부처와 기관 및 국가회계 기준센터가 참여하여 정부회계의 발전방향과 세계 각국의 정부회계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본 세미나는 28일 일본의 정부회계제도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의 국가(지방)회계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이후 유럽, 미국, 중국 등 정부회계의 국제간 비교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07 2011년 XBRL Korea Conference (9.29)

지난 9월 29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2011년 XBRL Korea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윤정원 책임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위한 XBRL기반 결산 시스템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XBRL 도입 유용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 외 금융감독원의 XBRL기반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국내 도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다.

08 ADB(Asian Development Bank) 기획재정부 방문 (9.30)

지난 9월 30일 ADB(Asian Development Bank)의 정홍상 회계국 국장과 니시모토 Senior Specialist로 구성된 방문단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시아의 발생주의 정부회계 포럼 창설을 위한 사전 조사로 한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사례를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은 기획재정부 최원석 사무관이 한국의 발생주의 도입 경험을, 국가회계기준센터 윤정원 책임연구원이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내용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09 연구원 직급체계 개선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존의 일률적으로 부여하였던 '연구원' 직급을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현재까지 각 팀별로 경력에 맞게 선임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었음에도 이제까지 단일직급을 사용함으로써 대외활동과 행정업무에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경력을 고려하여 직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직급체계 개선으로 윤정원, 김은영, 현지용연구원은 책임연구원으로 한소영, 박보희연구원은 선임연구원으로 직급이 변경되었다.

03 NASC

국가회계제도 동향

윤성호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3149.7562 / e-mail_shyoon80@kicpa.or.kr

01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개정 및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제정

2011년 8월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 제37조에 대한 세부회계처리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의 개정과 국가회계기준 제38조의2에 대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인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산정방법 및 감가상각 회계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은 자산재평가 대상, 재평가액의 산정방법 및 재평가 회계처리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를 별지로 첨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제공하였다.

상기 회계처리지침은 제13, 1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02 연금회계준칙 고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4조에 따른 「연금회계준칙」이 제정되어 8월 3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되었다. 「연금회계준칙」은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채회계처리 소위원회를 거쳐 제1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03

공무원 국가회계교육

기획재정부는 8월 1일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국가회계실무교육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의는 재산관리관, 지출관 등 업무담당자를 위한 교육과 각 회계·기금별 결산담당자를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총 15회차(서울 12회, 대전 3회)로 이루어진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지난해와는 달리 이론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실무 중심의 강의를 실시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이해도 및 숙련도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류사례 및 처리방법 등을 전파함으로써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가회계 전문교육과정('11. 8. 1 ~ 12. 2)에 대한 교재 작성 및 강의진에 참여하였다.

04

2011회계연도 중간결산검토 실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회계·기금의 결산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회계연도 중간결산 검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센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공동으로 2011회계연도 중간결산 검토계획, 검토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dBrain을 활용한 중간결산 검토 방법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중간결산 검토는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최초 국회제출에 대비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감사원 예비검사 시 지적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데, dBrain을 사용하는 회계·기금이 중간결산 검토 대상이며,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연계기관들은 내부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결산 주요 검토사항은 내부거래 관련 거래처 입력오류 검토, 계정과목명세서 검토, 계정과목 선택오류 검토, 감가상각 기본정보 입력여부 검토 등이며, 각 회계·기금은 9월말을 기준으로 10월 한 달 동안 중간결산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 중간결산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04 NASC

외국회계제도 동향

정지웅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Tel_02.3149.7568 / e-mail_ jwng113@kicpa.or.kr

01 미국 공공부문 회계 동향

• **FASAB, 연방리스회계기준에 대한 계획 승인 ('11.9.7)**

FASAB 사무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FASB/IASB의 리스 관련 기준서가 최종적으로 발행되면, SFFAS 34에 따라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연방정부기관들은 새로운 FASB/IASB의 리스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그 해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FASAB은 8월 회의에서 기존 리스회계기준을 검토하고 연방기관의 요구를 다루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FASB/IASB의 리스 관련 기준은 2012년 내에 최종적으로 공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 공표로 인해 연방재무회계기준이 자동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리스 거래를 다루는 기존의 FASAB 기준은 연방재무회계기준서(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FAS) 제5호 연방정부 부채의 회계처리 [문단 43 - 46] 및 제6호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처리 [문단 20, 29]에 명기되어 있으며, 동 기준들은 원래 제정 당시의 FASB 리스 관련 기준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현재 FASB 및 IASB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사용권 등)의 양도에 중점을 둔 리스회계처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FASAB 또한 연방기관의 요구를 다루기 위한 리스회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기준에 비해 연방 리스거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동 프로젝트의 수행을 돕기 위한 TFT가 꾸려질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FASAB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leases/ 에서 확인 가능하다.

• **GASB, 특정 항목을 자원의 이연유출 및 이연유입으로 인식 제안**

GASB는 2011년 8월 26일 주·지방정부 재무제표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원요소의 이연유출(deferred outflows)[1] 및 이연유입(deferred inflows)[2]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보다 넓은 범위의 항목에 적용한 공개초안을 발행했다. 『과거 자산 및 부채로 인식된 보고항목(Reporting Items Previously Recognized as Assets and Liabilities)』 기준서 초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 및 부채로 보고되고 있는 특정 항목은 4가지 재무제표 요소, 즉 자원의 이연유출, 유출, 이연유입 및 유입 중 하나로 재분류 되거나 혹은 인식된다.

『개념보고서(Concept Statement) 제4호 재무제표의 요소』에 의해 자원의 이연유출 및 이연유입의 정의를 충족하는 많은 항목들은 현재 GASB의 제정 GAAP상에서 구체적으로 상기와 같이 구분되지 않는다. 개념보고서에는 이연유출 및 이연유입의 인식은 GASB의 발행 기준서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이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자원의 이연유출 및 이연유입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

로버트 애트모어(Robert H. Attmore) GASB 의장은 "어떠한 항목들이 자원의 이연유출 혹은 이연유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본 기준서 초안은 GASB가 재무상태표 항목의 개념적 정의를 만족한다고 판단한 항목들을 보여주며, 이해당사자들이 우리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기준서 초안의 요구사항들은 2012년 6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장려된다.

02 영국 공공부문 회계 동향

• **LASAAC, 의원 및 시민들의 지방정부 재무제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침서 작성**

지방정부의 재무상태에 대한 양질의 일관적인 정보에의 접근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작성한 재무제표는 공공자원의 관리 및 지방정부의 재무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 재무제표는 의원들 및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스코틀랜드)

1) 미래보고기간에 속하는 보고실체에 의한 자원의 소비

2) 미래보고기간에 속하는 보고실체에 의한 자원의 획득으로 assets + deferred outflows of resources − liabilities − deferred inflows of resources = net assets

지방회계자문위원회(Local Authority (Scotland) Accounts Advisory Committee : LASAAC)는 경고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IFRS 도입은 일반사회 구성원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재무정부의 한 예이다.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현재 IFRS 회계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지방정부회계와 기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회계 간의 비교가능성 제고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재무제표 이용자, 특히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LASAAC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재무제표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했다. 본 지침서는 의회의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다양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교육 자료로서, 그리고 의회의원들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다.

린 브래들리(Lynn Bradley) LASAAC 의장은, "많은 재무정보들이 복잡해서 의회의원 및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지방정부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지침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 지침서는 스코틀랜드 상황에 맞게 작성되었지만 대부분이 내용들은 영국 전역에 유의하게 적용될 수 있다. LASAAC는 본 지침서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때 제시된 의견으로 본 지침서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를 얻었다.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05

배재철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63 / e-mail_lunaluna@kicpa.or.kr

〈자산재평가 소개〉

Ⅰ. 머리말

2008년 국가회계법의 제정으로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부부문에 시행되었다. 2009년 이전 현금주의에 의한 자산관리 및 평가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자산(특히,「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은 국유재산 결산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유재산대장 상으로 관리된 경우라도 취득일자가 오래되어서 취득원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자산재평가를 통해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자산재평가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회계기준 제38조의 2에 대한 세부지침으로서「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을 2011년 8월에 제정하여 자산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자산재평가 소개는 사례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 재평가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해설

① 재평가 대상

자산재평가는 국가회계 도입 첫 해인 2011년도 재무제표 금액 결정을 위한 최초 재평가와 그 이후의 재평가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11년도 최초 재평가의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발생주의 도입 이후 자산의 인식 및 측정이 이루어진 자산이므로 취득원가의 신뢰성이 높고 공정가액에 근접한다는 판단에서 재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재평가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입목, 선박, 항공기이다.

최초 재평가 이후의 재평가는 우선 국유재산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유재산 총괄청에서 고시한「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에는 토지에 한해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는 자산도 재평가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에는 양적요소로 「채권·채무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의 중요성기준을 준용하여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하고 그 차이금액이 1억을 초과할 때 자산재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재평가방법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경우 실제 매매 시 매매가액이 공정가액이 되는 것이다. 만약,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한 평가액도 공정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감정평가액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인 평가방법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이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표준공시지가, 건물 등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시가격 역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상각후대체원가는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경우 투입될 최적의 건설원가액(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한 방법으로 정의되며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상각후대체원가} = \text{재조달원가} \times \frac{\text{잔존내용연수}}{\text{내용연수}}$$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단위당 재조달원가법과 물가배수법 두 가지가 있다. 단위당 재조달원가법은 최근 취득 또는 건설된 유사한 자산의 평균단가를 계산하여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며 물가배수법은 단위당재조달원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적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에 한해 현재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text{재조달원가} = \begin{cases} \text{① 단위당 재조달원가} \times \text{기준단위로 표시된 물량} \\ \text{또는} \\ \text{② 취득원가} \times \text{물가배수} \end{cases}$$

③ 자산별 대체적 평가방법

이번 절에서는 사례를 통해 자산별 대체적 평가방법의 적용순서 및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재평가 대상 자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입목, 선박, 항공기이다.

가. 토지

토지의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①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 동일·유사지목 개별공시지가의 산술평균가액
④ 해당 토지의 법정동 최저공시가액

나. 건물

(1) 대체적 평가방법 적용순서

건물의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①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② 주택외 건물의 경우「지방세법」제4조2항에 따라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
③ ①, ②의 공시된 주택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면적, 구조지수, 용도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재조달원가를 이용한 상각후대체원가법. 다만,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

(2) 사례 탐구

(사례1) X부처의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대체적 평가

〈기본정보〉
- ㅇ 취득일자 : 1998년 9월 12일
- ㅇ 소재지 : 대구광역시 A구 B동 245번지
- ㅇ 면적 : 46㎡, 취득가액 : 51,000,000원
- ㅇ 종류 : 직원숙소
- ㅇ 건물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주거시설(개별단독주택)
- ㅇ 건물내용연수 : 50년(경과내용연수 13년, 잔존내용연수 37년)

□ 주택공시가격 적용 -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택공시가격을 검색을 하였다.

가격기준연도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2011-01-01	46	46	1억

토지대장이 별도로 관리되어 주택의 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단, 토지대장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분하지 아니한다.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소재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 산정가격)

기준연월일	개별공시지가
2011-01-01	1,340,000원
2010-01-01	1,320,000원

재평가금액은 가장 최근 기준일의 금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2011.1.1.일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토지 시가표준액 : 1,340,000원(개별공시지가) × 46㎡(면적) = 61,640,000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가 100이고 경과년수 잔가율이 0.792인 것을 확인한 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건물 시가표준액 : 580,000원(건물신축가격기준액) × $\frac{100}{100}$(구조지수) × $\frac{100}{100}$(용도지수) × $\frac{100}{100}$(위치지수) × 0.792 × 46㎡(면적) = 21,130,560원

마지막 단계로 다음과 같이 주택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재평가금액을 산정한다.

※ 건물 재평가금액 : 1억원(주택공시가격) × $\frac{21,130,560(\text{건물})}{61,640,000(\text{토지})+21,130,560(\text{건물})}$ = 25,529,077원

□ 상각후대체원가법 - 신축가격기준액 또는 물가배수법 적용시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하며 신축가격기준액을 적용하는 방법과 물가배수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다.

가. 신축가격기준액 적용 상각후대체원가법

행정안전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구조지수, 용도지수가 100임을 확인한 후 건물 재조달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건물 재조달원가 : 580,000원(신축가격기준액) × 46㎡(면적) × $\frac{100}{100}$(구조지수) × $\frac{100}{100}$(용도지수) = 26,680,000

재조달원가에 물리적감가를 반영한 건물의 재평가금액을 계산한다.

※ 건물 재평가금액 : 26,680,000 × $\frac{37(\text{잔존내용연수})}{50(\text{내용연수})}$ = 19,743,200원

나. 물가배수법 적용 상각후대체원가법 - 취득원가 신뢰성 전제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의 [별첨 1]에 기재된 물가배수표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연도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되는 물가배수를 확인한다.

물가배수부문 / 년도	1	2	3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1998	1.54	1.83	1.59
1999	1.57	1.84	1.58
2000	1.56	1.82	1.51

물가배수를 확인한 다음 취득원가에 해당 물가배수를 곱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

※ 건물 재조달원가 : 51,000,000원(취득원가) × 1.54(물가배수) = 78,540,000원

마지막단계로 재조달원가에 물리적감가를 반영한 건물의 재평가금액을 계산한다.

※ 건물 재평가금액 : 78,540,000원(재조달원가) × $\frac{37(\text{잔존내용연수})}{50(\text{내용연수})}$ = 58,119,600원

(사례2) X부처의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외 건물의 대체적 평가

〈기본정보〉

- ○ 취득일자 : 2004년 10월 2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A구 B동 2-63
- ○ 면적 : 4,950㎡, 취득가액 : 63억원
- ○ 종류 : 청사(10층)
- ○ 건물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 ○ 내용연수 : 50년(경과내용연수 7년, 잔존내용연수 43년)

□ 건물 시가표준액 적용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ETAX사이트(http://etax.seoul.go.kr/)의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해당 건물의 지번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타나며 호수별로 시가표준액 검색이 가능하다

번호	번지	호	동	호수	물건명	상세보기
1	0002	0063	0000	0101	B동 2-63 101호	‣ 상세보기
2	0002	0063	0000	0201	B동 2-63 201호	‣ 상세보기
3	0002	0063	0000	0301	B동 2-63 301호	‣ 상세보기
·	·	·	·	·	·	·
·	·	·	·	·	·	·
10	0002	0063	0000	1001	B동 2-63 1001호	‣ 상세보기

101동의 상세보기 탭을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가 있다.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 물건명 : 0002번지-0063호 0000동 0101호
- 연면적 : 495 (㎡)
- 시가표준액 : 5억

➢ 시가표준액 열람자료는 2011년 1월 1일 자료입니다.
➢ 동·호수 불일치로 검색이 안되거나 1월 1일 기준일 이후 신축/증축 등으로 시가표준액변동시는 물건지별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시가표준액은 토지지분면적 × 토지공시지가(㎡)입니다.

조회한 결과 각 층별 시가표준액은 5억이고 10층 건물 이므로 이 건물의 전체 시가표준액은 50억이 된다.

□ **상각후대체원가법 - 주택의 경우와 동일 (사례 생략)**

다. 구축물

구축물은 인위적으로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만든 것이며,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에 고정한 인공적인 구조물을 말한다.

(1) 대체적 평가방법 적용순서

구축물의 경우 다음 순서대로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① 재평가 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
② 단위당재조달원가법 또는 물가배수법을 적용한 상각후대체원가법

구축물의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우선 적용한다. 하지만, 구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결정·공시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축물의 가격평가는 유사구축물로 그룹화 할 수 있는 자산에 한하여 단위당재조달원가를, 이외 구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기반으로 한 물가배수법을 적용한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주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구축물의 경우 도로, 교량, 포장, 하천의 제방 등 그 규모가 크고 자산별 특성이 매우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 실무적용서는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의 별지로서 사회기반시설 구축물의 단위당 재조달원가법

을 이용한 재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를 준용하여 다른 구축물의 재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상각후대체원가법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식 중 단위당 재조달원가법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최근 건설된 유사한 자산의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단위당 재조달원가는 원칙적으로 최근 건설된 유사구축물의 실제 건설원가를 건설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최근 건설된 실제건설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구축물의 평균설계단가나 단위당 건설예정원가를 단위당 재조달원가로 할 수 있다.

단위당 재조달원가 = ① 실제건설원가 ÷ 건설물량(면적, 부피 등) 또는 ② 평균설계단가, 단위당 건설예정원가

(2) 사례 탐구

(사례1) X부처의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교량의 상각후대체원가

〈기본정보〉
- ○ 자산명 : 교량(철근콘크리트교)
- ○ 취득일자 : 1996년 1월 21일
- ○ 취득가액 : 125,000,000원
- ○ 연장 : 200m
- ○ 차선정보 : 왕복 6차선(6차선 총폭 : 26.5m)
- ○ 내용연수 : 50년(경과내용연수 15년, 잔존내용연수 35년)

단, 재평가 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 해당자산의 경우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단위당 재조달원가 적용 상각후대체원가법**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에 따라 X부처 교량의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유사구축물의 범위 결정

X부처의 일반회계가 보유한 교량의 취득원가 자료가 없어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왕복 6차선 교량인 A, B를 유사구축물로 선정하였다.

2단계 : 기준단위의 설정

교량의 경우 면적(㎡)을 기준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향후 구축물 관리에 가장 용이하고 판단하였다.

3단계 : 최근 5년간의 실제건설원가 자료 입수

최근 5년 내에 건설된 왕복 6차선 교량인 A, B의 총공사비와 면적(㎡)등의 자료를 입수하였다.

4단계 : 유사구축물의 총건설원가에 물가상승률 반영

「국유재산가격평가지침」의 [별첨 1]에 기재된 물가배수표에서 교량 A와 B의 물가배수가 각각 1.17, 1.13인 것을 확인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총건설원가를 계산하였다.

5단계 : 재조달원가 산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건설원가를 면적(㎡)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재조달원가를 계산하였다.

종류	기준단위 물량산정			물가환산 총 건설원가				면적(㎡)당 원가
	교량 연장 (m) (A)	차선폭 (m) (B)	면적 (㎡) (C=A×B)	준공 연도	총건설원가 (D)	물가 배수 (E)	환산 후 총 건설원가 (F=D×E)	(E=F÷C)
A교량	100	26.5	2,650	2006	100,000,000	1.17	117,000,000	44,151
B교량	20	26.5	530	2007	30,000,000	1.13	33,900,000	63,962
합계	120	26.5	3,180		130,000,000		150,900,000	47,453

다음과 같이 단위당 재조달원가에 면적을 곱하여 재조달원가 산정한 후

※ 교량 재조달원가 : 47,453원(단위당 재조달원가) × 5,300*㎡(면적) = 251,500,900원
* 기준단위로 표시된 물량 = 200m(교량 연장) × 26.5m(차선폭) = 5,300㎡

재조달원가에 물리적감가 등을 반영하면 재평가금액을 구할 수 있다.

※ 교량 재평가금액 : 251,500,900원(재조달원가) × $\frac{35(\text{잔존내용연수})}{50(\text{내용연수})}$ = 176,050,630원

라. 입목

입목의 경우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신뢰성있는 가액을 사용하여 재평가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마. 기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① 재평가 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
② 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견적가를 재조달원가로 하는 상각후 대체원가법. 다만, 취득원가가 신뢰성이 있다면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

5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자산재평가 시 필요한 회계처리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자산재평가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의 처리와 관련된 계정과목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자산재평가이익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으로 순자산조정으로 처리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금액이 최초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재평가손실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으로 비배분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자산재평가손실환입 : 이전에 자산재평가손실이 발생하였던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과 기 발생한 자산평가손실 중 작은 금액을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순자산조정으로 처리된 자산재평가이익은 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 상각시점에 상계 처리된다.

6 맺는말

지금까지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 및 주요 자산에 대한 재평가금액 산정방법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자산재평가회계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에 최초 수행되는 자산재평가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며 2011년 이후에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국유재산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거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이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재평가를 수행한다.

재평가금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을 주로 사용하며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의 평가액도 공정가액으로 인정한다.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체적인 평가방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과 상각후대체원가법으로 구분한다. 이 중 상각후대체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위당 재조달원가법과 물가배수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 최초 국회제출 재무제표부터 자산재평가회계처리지침이 적용되어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은 일관된 평가기준으로 가격평가가 수행되므로 재정상태표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의 중요성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자산재평가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는 회계처리지침 교육, 재평가관련 FAQ 마련 및 디브레인을 통한 자동계산 시스템 개발 등 지속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지사항

06 nasc

김상노 팀장 _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Tel_02.3149.7551 / e-mail_ alcaz@kicpa.or.kr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회원가입 또는 ② 02-3149-756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회계저널 논문 접수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연간2회 발행하는 「정부회계저널」에 게재할 논문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저널 발간일정 : 연간2회
- 논문접수 : 연중 수시

–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F 국가회계기준센터
– TEL : 02-3149-7560(담당자 - 전승진)
– FAX : 02-3149-7570
– E-mail : nasc@kicpa.or.kr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정부회계저널,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등의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영국,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 위탁운영기관 | KICPA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한국공인회계사회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2011년 9월 30일 발행